

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일부개정

1. 개정이유

「국토교통부 공무원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」과 「국도관리원 관리규정」의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이 서로 상이 한 부분이 있어 이를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

2. 주요내용

가. 『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』 제20조제15항 및 『국토교통부 공무원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』 제41조와 맞게 휴가 기간을 변경(자녀 3명 → 자녀 2명)

- 근로자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2일(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)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

나. 『국가공무원법』 제72조제1항제7호 및 『국토교통부 공무원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』 제33조제1항제4호와 맞게 휴직 기간을 동일하게 추가 명시

-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)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: 3년 이내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특기할 사항 없음

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

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8항 중단 중 “자녀가 3명”을 “자녀 2명”으로 변경하고, 제18조제2항제4호에 “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)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: 3년 이내”를 신설한다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휴가) ①~⑦ 생략</p> <p>⑧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(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)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.</p>	<p>제17조(휴가) ①~⑦ 현행과 같음</p> <p>⑧ ----- ----- --(자녀가 2명 ----- ----)----- -----.</p>
<p>제18조(휴직 및 복직) ① 생략</p> <p>②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~3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8조(휴직 및 복직) ① 현행과 같음</p> <p>② -----.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)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: 3년 이내</u></p>